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아동청소년과)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563
----------	-----

제출년월일 : 2026. 2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 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인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5. 31.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89-6
- 규 모 : 대지 257㎡, 연면적 477.80㎡ (지하1층/지상3층)

나. 위탁기간 : 2026. 6. 1. ~ 2029. 5. 31.(3년)

다. 위탁사무의 범위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청소년 문화공간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주민 등)과의 우선 연계
-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기타 “성북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위탁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최초위탁 후 재계약 1회)로 재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실시

바. 수탁자격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사. 기존 위탁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위탁기간	종사자수	수탁기관	소요예산 (‘26년 기준)
장위청소년 문화누림센터	- 위치: 성북구 장월로89-6 - 규모: 477.80㎡ (지하1층/지상3층)	2023.6.1. ~ 2026.5.31.	5명	(사)한국청소년 한마음연맹 (센터장: 김은희)	437,263(구비)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사업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도모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